사단법인 한학사 정 관

2019. 08. 05. 제정 2020. 05. 28. 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이 법인은 "사단법인 한학사"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소재지) 법인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고, 분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 시에 두며, 향후 필요한 곳에 각 지역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(목적) 본 법인은 민법 제 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 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, 독서생활 활 성화와 바람직한 독서문화 확산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의 건전 한 정서함양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①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독서 문화활동 지원
- 2. 지역 및 산업체에 대한 독서 활성화 지원
- 3. 독서교육을 위한 연구모임 운영 및 관련분야 전문가 육성
- 4. 취약계층의 독서를 통한 문화복지 실현
- 5. 작은도서관 보급 및 설립 운영
- 6. 기타 이상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- ② 법인은 목적사업의의 본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, 경비충당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아동 · 청소년 도서 출판사업
 - 2. 독서물품 판매 · 광고 홍보사업
 - 3. 독서 직무 교육사업

제2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 ①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
② 정회원 및 후원회원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, 단체회원은 대표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 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- 1.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제8조(회원의 탈퇴)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9조(회원의 상벌)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3장 임 워
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1. 이사장 1인
- 2. 사무총장 1인
- 2. 이사 3인~ 15인(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) 이하
- 3. 감사 2인 이하

제11조(임원의 선임)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- ④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지정한다.

제12조(임원의 선임 제한)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3조(상임이사)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상임이사로 둔다.

제14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- 2.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5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이사(사무총장 포함)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- 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-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- 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7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4장 총 회

제18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9조(구분 및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다.
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

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1조(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3.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5. 사업계획의 승인
- 6.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
제23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5장 이 사 회

제24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5조(구분 및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6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7조(서면결의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8조(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29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정관변경에 관해 총회에 부의할 사항
- 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9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장 재산과 회계

제30조(재산의 구분)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
- 1.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"별지 1"과 같다.
- 2.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1조(수입금)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32조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3조(예산편성) 법인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34조(결산)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5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6조(회계의 공개)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
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

제37조(임원의 보수) 사업의 운영을 상임으로 전담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사무부서

제38조(사무국)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다.

-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8장 보 칙

제39조(법인해산)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40조(청산종결의 신고)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제41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2조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3조(고문 및 자문위원 등) ①법인은 설립정신을 기리고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, 전문위원,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 및 자문위원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44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당초의 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 설립 당초의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 시 용산구 한강대로 80길 11-5, 101호에 두고, 분사무소는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30번길 35, 리치플러스 504호에 둔다.

제4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직위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임기
이사장				2년

이사		2년
이사		2년
감사		2년
감사		2년

제5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성 명	생년월일	주 소	날	인

<u>기 본 재 산 목 록</u>

(2019년도)

재산구분(지목별)	수 량 (m²)	금액 (가액)	비고
토지 및 건물	m²	0원	
	m²		
	m²		
	m²		
【부동산 소계】	m²	0원	
현금	m²	0원	
	m²		
기타			
【합 계】	m²	0원	